

1.1 유가조정의 특징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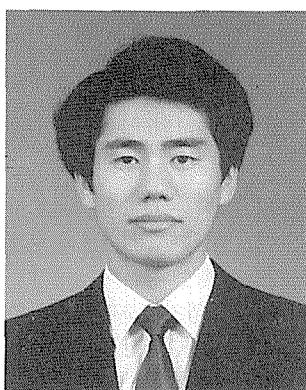
어느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중에서 가격통제만큼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것은 없을 것이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가격기능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정부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몇몇 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지만,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최고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는 석유가 산업 전

반의 기간이 되는 에너지자원이며, 그동안 국제석유시장이 불안정하여 국내 석유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정부는 이처럼 석유산업에 있어서 시장기능의 핵심인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석유산업 전반에 정책의지를 개입시킬 수 있다. 이때, 석유 가격의 결정은 단순히 물가에 대한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석유소비 패턴과, 석유산업의 공급패턴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가격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금번('94. 1. 1.) 가격조정에 있어서도 정부는 물가영향, 유가연동제의 실시, 석유산업의 건전육성, 세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장사범

<상공자원부 석유정책과 행정사무관>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며, 하나 하나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미흡하지만, 전체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로서 최종가격조정안이 선택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가격조정 배경

금번 가격조정은 무엇보다도 특소세 인상 때문에 불가피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방안의 일환으로 석유류 특소세가 지난 1월 1일부터 인상되었는데, 이를 소비자가격으로 그대로 전가할 경우 평균 4.24%의 가격인상요인이 되었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 인상요인이 0.41%P, 소비자물가인상요인이 0.22%P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의 흡수를 위한 조치가 요망되었는데 다행히도 최근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세전공장도가격을 인하함으로써 특소세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었다.

한편, 석유산업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석유가격 자유화의 전단계로서 유가연동제를 '94년중 실시기로 하였으므로, 금번 가격조정 시 유가연동제와 연계시켜 국내석유가격구조를 국제화하고, 유통부문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3. 금번 유가조정의 특징

(1) 특소세인상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

지난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가 휘발유는 현행 109%에서 150%로, 경유는 9%에서 20%로, LPG는 8%

에서 10%로 인상조정되고, 등유와 LNG에는 신규로 10%씩 부과됨에 따라, 휘발유 가격 17.7%, 등유가격 10.2%, 경유가격 8.9%등 대폭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소비자부담이 크게 되고, 물가불안이 우려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약세 상황을 활용하여 국내 기준유가와 도입유가의 차액을 전부 공장도가격 인하재원으로 활용하므로써 특소세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을 흡수하였다.

이를 위해 기준유가는 종전의 17.18 \$/B에서 15.00 \$/B로 인하시켰고, 기준 환율은 최근실적을 반영하여 종전의 800₩/\$에서 810₩/\$로 현실화 시켰다.

(2) 공장도가격구조의 국제화 접근

금번 유가조정은 1차적으로 특소세 인상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단순히 특소세 인상분을 흡수하는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 세전공장도가격 구조를 국제시장 가격구조로 상당히 접근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종전에 국내유가 조정시마다 B-C유는 산업용연료유라는 이유로, 경유는 대중교통수단의 연료유라는 이유로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가격인상요인을 휘발유·등유에 누적적으로 전가시켜 왔기 때문에, 현재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 가격구조는 국제가격구조(수입가격구조)와 크게 괴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제시장에서 휘발유·등유 가격은 경유가격과 거의 비슷한데 비해 국내 세전공장도는 휘발유·등유가

금번 유가조정은 단순히
특소세 인상분을
흡수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전공장도가격구조를
국제시장가격구조로 상당히
접근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석유가격조정은 유종별
가격의 변경보다도
유가연동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국내 세전공장도가격과 국제가격 비교
(단위 : \$ /B)

| | 종 전 | 조 정 후 | 일 본 | 싱가포르FOB |
|-------------|----------------|----------------|----------------|----------------|
| 휘발유 | 47.78 (155) | 39.97 (144) | 46.92 (143) | 26.77 (106) |
| 등유 | 40.31 (131) | 35.67 (128) | 32.90 (100) | 25.70 (101) |
| 저유형 경유 | 30.81 (100) | 27.81 (100) | 32.84 (100) | 25.35 (100) |
| 저유형 B-C유 | 16.70 (54) | 16.50 (59) | 23.68 (72) | 16.12 (64) |

주) 1. 외국자료는 PMI(Petroleum Market Intelligence)지, '92평균가격
2. ()는 각 시장별 경유가격 대비 유종간 상대가격비, %

경유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아 정유업체의 이익이 휘발유·등유 판매에 집중되므로써 유통부문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국민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가자유화시 국내 공장도 가격은 수입가격구조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국내공장도와 국제가격 격차를 방치한 상태에서 유가자유화가 시행될 경우 급격한 국내가격구조 변화로 충격이 를 수 있으므로, 유가자유화 이전에 국내 공장도가격을 점진적으로 국제유가구조로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번 가격조정시 국내 세전공장도 가격구조를 가능한 한 국제시장 가격구조로 접근시키려 하였는데, '92년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평균가격구조를 국제가격의 기준으로 삼았고, 점진적 접근을 위해 현행구조에서 싱가포르구조로 30% 접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유통부문의 합리화 고려

또한, 유가연동제 실시와 함께 유

통부문의 합리화가 진전되어야 향후 유가자유화를 무리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금번 가격조정시 유통부문 합리화 시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현재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는 정부가 고시해주는 수수료 외에 정유사의 별도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유가자유화를 앞두고 유가연동제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유통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유사들은 유통부문에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형태로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중질유분해·탈황등 생산시설 투자자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유사의 유통부문 지원자금을 감축토록 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유통업체 이자부담 증가분을 유통수수료 인상으로 보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번 유가조정시 정유사의 유통부문 자금을 감축토록 함과 동시에 유통 수수료를 유종별로 리터당 1~2원씩 인상시켰다.

한편, LPG는 최근 빈발하는 가스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충전소 및 판매소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마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유통수수료를 인상하였다.

(4) 저유황유가격 신규 고시

환경처의 석유류 유황함유율규제 강화에 따라 '93년 1월 1일부터 유황함량 0.2% 경유가, '93년 7월 1일부터 유황함량 1.0% B-C유가 신규로 공급되었으나, 정부는 당시 물가불안을 고려하여 동제품의 신규가격고시를 당분간 유보하되 향후 가격을 신규 고시기로 한 바 있었다. 따라서 금번 가격조정시 동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유황함량이 적은 만큼 원가 차이를 고려하여 가격을 신규고시하였다.

또한, 부족한 국내 탈황시설의 투자촉진을 위해 탈황시설의 경제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 가격차를 확대하였다.

다만, 당초 생각은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 가격차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정책변수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현행보다 유황함유량 당 가격차를 약간만 확대시키는데 그치게 된 아쉬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유가조정시 더욱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유가연동제의 실시

금번 가격조정은 유종별 가격의 변

경보다도 유가연동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유가연동제란 국내유가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연동되어 주기적·자동적으로 변동되는 유가제도를 뜻한다. 유가연동제가 실시되므로 이제 더이상 정부가 국내유가원충을 하지 않게 되었고, 국제유가의 변동이 그때그때 국내유가에 반영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가 자유화로 진일보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94년 1월 1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실시한다는 원칙만 공표했을 뿐 구체적인 고시안은 이번에 공표되지 못했는데, 연동제고시는 1월 말경 이루어질 전망이며, 그에 따른 최초 가격변동일은 아마도 오는 2월 15일이 될 것이다.

4. 맺는말

시장경제에서 가격기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석유가격구조의 변경이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격조정시 고려해야 할 정책변수들이 많은데 모든 정책변수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가격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금번 가격조정도 개별 정책목표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타협안에 불과하지만, 종합적으로는 무난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이제 유가연동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가자유화로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유가연동제 고시는 1월말경
이루어질 전망이며, 그에
따른 최초 가격변동일은
아마도 오는 2월 15일이 될
것이다.